

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

의회운영위원회

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

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감사의 목적

1999년도 예산(안) 및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함.

2. 감사기간

- 1998. 11. 28 (토) (1일간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- 의회사무처

4. 감사반 편성

위원회별	감사반장	감사위원	보 조 자
의회운영위원회	장 준 호	이 근 성 한 현 태 오 장 세 박 노 철 유 동 찬 김 소 정 신 택 수	전문위원 김 영 만 직 원 박 홍 근 속 기 사 이 윤 호 안 인 욱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시	대상기관	대상장소	감사방법
11. 28 (토) 10 : 03 ~ 11 : 39	의회사무처	의회운영위원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황보고청취 ○ 정책질의 ○ 자료심사 ○ 기타

6. 주요감사실시내용

- 예산집행사항
- 의회대외 홍보실적 및 활성화 사항
- 청원 및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

7. 감사결과

가.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
- ①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.
- ② 의정홍보는 가급적 전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하고, 왜곡보도가 없도록 홍보대책 강구.
- ③ 의원수첩 제작시 의원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신속히 제작 배부토록 할 것.
- ④ 도정운영에 따른 중요 사안발생시 도의회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을 정례화 하도록 유도할 것.
- 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청시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것.

나. 건의사항

- ① 홍보활동은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 및 예산확보에 노력 할 것.
- ②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이 없도록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.
- ③ 전문분야를 요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가능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직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바람.
- ④ 사법부나 법무, 검찰, 변협, 법무사협회에서 법원공보라든가, 검찰공보, 변협지, 법무사협회지, 법조, 검찰등에서 발간되는 간행물과 통계자료등을 의회자료실에 비치하기를 바람.
- ⑤ 본회의시 방문한 도민들과 의장, 도지사와의 대화창구로서 간담회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고 기념품이나 홍보책자, 안내책 등을 제공하여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것.